

**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**

**연금보험 이중과세 판결, 생보업계 대책 마련 부심**

- 최근 대법원은 유족에게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한 현행 조세법은 이중과세라는 판결을 내려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.
  - 지난 7월 6일 대법원은 계약자 사후 유족에게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상속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현재의 조세 방식은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만큼 기 납부된 소득세를 보험 수급자에게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림.
  -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계약자 사망 시 유족이 연금으로 매년 10,230 엔을 10년 간 받는 다이이치생명의 연금보험으로, 유족 연금보험의 상속세와 소득세 동시과세는 이미 1960년대부터 관례화되고 있음.
  - 판결 직후 재무부장관은 세금 환급이 인정되는 과거 5년 이내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 조치하는 한편, 5년 이상이 된 계약에 대해서도 차후 법개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.
  
- 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는 향후 소득세 환급 대상자 선별 및 시스템 변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.
  - 생명보험업계는 이중과세로 인정되는 상품의 범위와 환급 방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40년간 지속되어 온 관례를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임.
  - 현재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계약 건수는 파악된 것만 니혼생명 3,400여 건, 메이지야스다생명 3,600여 건 정도로, 업계 전체로 볼 때 최대 수백만 건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음.
  - 연금 지급 시 소득세를 자동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환급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통보 관련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번 사건은 최근 규제강화 및 저성장으로 부진 중인 생명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됨.

(J-CAST뉴스, 후지일보, 7/12)